

5.1.44 초당대학교창업보육센터운영규정

제정 2024. 10.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시설물 관리, 졸업 및 퇴거, 재정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보육”이라 함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 세무, 회계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센터가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받기 위하여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보육실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졸업기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센터에서 졸업한 입주자를 말한다.
4. “보육부담금”이라 함은 센터의 보육(시설 및 장비의 사용, 지원서비스의 수취 등)에 대한 대가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말한다.
5. “퇴거”라 함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센터에 의하여 또는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공부담금”이라 함은 센터에 입주한 입주자가 창업지원실 및 공용시설, 창업육성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아 자립경영 기반을 갖게 되는 경우 본 센터에 기부 또는 납부하는 주식 및 금품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창업보육
2. 입주자 및 졸업기업의 판로지원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센터 또는 입주자의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초당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제6조(행정실) ① 센터에는 입주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를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에는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매니저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단 직원 또는 대학에서 파견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 졸업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 소관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산학협력단 단장, 교무처장, 기획연구처장, 학생복지처장, 사무처장, 취창업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제8조(입주대상자)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창업 아이템 또는 기술 보유자로 창업준비 중인 자
2.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 3년 이내의 자
3. 대학 및 타 기관에서 센터 입주경력이 없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 사업 업종이 폐수, 소음 및 진동 등을 유발하는 기업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입주자의 선정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심사표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신청자를 우대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센터가 특화 분야를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분야 신청자
2. 대학의 교수 및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3.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4. 대학(원)생 예비창업자
5. 숙련기술인 등 체계적인 창업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10조(입주신청 절차) ①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사업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산학협력단 및 센터 홈페이지에 접수 마감 20일 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발명 동아리의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입주기간 및 입주기간 연장) ①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월이상 3년 이내로 하되, 연장가능하다.

② 입주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 연장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2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정해진 기일 내에 체결하지 않는 경우
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입주를 정해진 기일 내에 하지 않는 경우
3.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① 입주예정자는 입주승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주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14조(입주시기 연기)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가 지연될 때에는 입주일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일은 최초 지정된 입주일로부터 30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15조(보육부담금 등) ① 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관리비 및 시설·장비 사용료 등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입주자는 입주일 이전까지 입주보증금을 센터에 납입하여야 하며, 센터는 입주자가 졸업 또는 퇴거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보육부담금의 납입방법, 입주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사업자 등록) 입주자는 입주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중 사업 아이디어 기획 및 기술개발 단계인 예비 창업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제17조(성공부담금) ① 센터는 졸업자 또는 퇴거자에게 성공부담금으로 주식의 일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성공부담금의 납입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③ 입주자 또는 졸업자는 성공부담금 이외의 센터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입주자 지원 등) ① 센터는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무, 회계, 마케팅, 지적재산권 및 세부기술 분야 등에 대하여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중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영 및 기술지도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경영·기술지도 등을 위하여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대학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 센터는 졸업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시설물 관리

제20조(시설물사용) ① 입주자는 교내의 공용시설물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센터 내 회의실 등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사용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센터는 사용자에게 소모품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21조(구조물의 설치 및 변경) ① 입주자는 센터 내부·외부의 시설물에 칸막이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조물의 설치 또는 변경자는 졸업 또는 퇴거 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그 비용은 구조물의 설치자 또는 변경자가 부담한다.

제22조(손해배상) 입주자 및 고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센터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입주자 금지사항) 입주자는 대학 또는 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숙박행위(다만, 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그 밖의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3. 위험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4.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제조 및 판매 행위
5. 임의로 냉·난방용 기기를 반입하거나 센터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행위

6. 센터에서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는 행위
7. 알콜성 음료를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다만, 주류의 개발을 목적으로 관련 상품을 연구·개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금지하는 모든 행위

제24조(물품 반출입) 입주자는 센터 내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물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센터 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시설을 갖추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소음 및 악취를 발생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활동을 해치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 센터는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방재관리) 입주자는 센터의 방재관리에 관한 제 규칙 및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소각행위를 할 수 없다.
2. 입주자는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센터 또는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센터 또는 해당 기관이 실시하는 방재관리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4. 입주자는 센터가 방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의무) ①입주자가 7일 이상 보육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에 서면으로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입주자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입주자 책임으로 한다.

제27조(보험가입) 입주자는 센터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8조(보육실출입) 센터는 보안, 위생, 방법, 방화 및 구호 등 관리상 급박한 경우에는 보육실 내에 출입할 수 있다.

제5장 입주자의 졸업 및 퇴거

제29조(졸업)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시킬 수 있다.

1. 입주자가 독립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경우
2. 입주계약이 만료된 경우

② 제1항의 졸업대상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창업보육센터

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졸업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졸업기업에 대해서는 졸업일로부터 3년간 관련 자료를 보존하며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리비 및 시설·장비사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액이 입주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3. 소음 및 악취를 과다 발생하거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타 입주자의 사업활동이나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보육실을 사전 신고 없이 2개월 이상 비운 경우
7. 그 밖의 창업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창업보육센터 퇴거희망원을 퇴거희망일 20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퇴거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입주보증금 정산) 입주자가 졸업 및 퇴거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관리비, 시설·장비사용료 및 그 밖의 센터 내 시설의 원형복구에 필요한 모든 비용 등을 입주보증금에서 정산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재정과 회계) ① 센터의 재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대학지원금, 보육부담금, 성공부담금, 기부금 및 기타 지원금으로 한다.

- ② 센터의 회계연도 및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제33조(기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창업보육센터 입주 심사표					
입주신청자	창업아이템				
	업체명		대표자명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창업자 역량 (총 25 점)	창업자의 자질			10	
	개발능력 및 의지			10	
	전문경력			5	
기술성 (총 30 점)	사업계획서의 충실도 및 타당성			10	
	기술인력 확보 수준			5	
	기술의 국내외 경쟁력			10	
	기술인정 자료 확보 정도(특허,기타)			5	
시장성 (총 30 점)	상품성			10	
	국내외 시장성			10	
	사업전망			10	
특화분야/협력 (총 10 점)	특화분야와의 연관성			10	
	협약사항 준수/센터 추진사업 동참			5	
합 계				100	
종합심사의견 (합격/불합격)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원_____ (인) 초당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서											
대표자성명				연 령	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FAX				
업 종							창업여부		☐ 예비창업 ☐ 기 창업		
개발(예정)품목							제품 사용분야				
입주예정기간		년					희망면적		m ²		
참 여 인 력	성 명		참 여 분 야							비 고	
<예비창업자> 현 재 소 속 부 서 직 위											
<기 존 업 체> ※ 창업 후 3년 미만 업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종업원 수		명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주생산품목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입주신청자 (인) 초당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귀하											

※ 첨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관련서류

【별지 제3호 서식】

창업보육센터 입주 사업계획서															
창 사 업 명															
창 업 자	성 명				전 화										
	소 속		직 위		팩 스										
	주 소	우			휴 대 폰	- - -									
					e-mail	@									
	구 분	☐ 예비창업자 ☐ 신규창업자 ☐ 교 수 ☐ 대학(원)생 ☐ 기 타 ()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창업보육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1. 사업계획서</td> <td>1부 원본(부 포함)</td> </tr> <tr> <td>2. 창업자 주민등록등본</td> <td>1부</td> </tr> <tr> <td>3.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사본</td> <td>1부 (해당자에 한함)</td> </tr> <tr> <td>4. 벤처기업확인서 사본</td> <td>1부 (해당자에 한함)</td> </tr> <tr> <td>5. 공장등록증 사본</td> <td>1부 (해당자에 한함)</td> </tr> </table>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초당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귀하						1. 사업계획서	1부 원본(부 포함)	2. 창업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1. 사업계획서	1부 원본(부 포함)														
2. 창업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별첨 1】

사업계획서

1. 창업자(창업기업) 현황

가. 창업자의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영문)				
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공	학위	비고
	고등학교부터				
경력	근무처	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	
	최근경력부터				
특기사항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상표, 자격증, 상벌, 연수, 사회활동, 수상실적 등을 기재 ※창업자와 기술보유자가 다를 경우,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 창업자가 數人인 경우이거나 창업자 외에 경영실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 작성 요망

나. 참여인력

성명	근무유형 (상근/비상근)	생년월일	소속	최종학력 및 전공	주요 경력	연락처

2. 사업화 내용 및 목표

기술성	창업 사업명	※ 개발/생산 제품의 최종목표(제품명) 등을 기재
	사양/성능 및 용도/활용분야	※ 최종 개발품의 개발목표, 사양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화에 기술력의 기여도 등 ※ 최종 개발품의 용도 및 활용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술
	보유기술/ 핵심기술	※ 창업사업명과 관련된 보유기술/핵심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창업사업명과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사업화실적 및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S/W, 노하우)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성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 및 국·내외 시장규모	※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을 기술 ※ 현재 및 향후 3년간의 예상되는 시장규모(국가 또는 지역), 시장의 성격 및 시장 진입 시 예상 문제점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기술
	국내·외 수요처 및 기술/가격 경쟁력	※ 주요 수요처, 주생산품, 수요량 및 금액 등 ※ 동종업체의 회사명, 매출액, 시장점유율 및 생산능력 등을 기술 ※ 국내·외 관련기술(제품)과의 기술적 차이점, 비교우위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기술

3. 총사업비 (추정금액, 1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자본금	창 업 자			
	기 타			
	소 계			
차입금	금융기관			
	기 타			
	소 계			
총 계				

5. 입주 동기 및 지원사항

(1) 입주 지원 동기

(2) 입주시 지원 희망사항

※ 창업보육센터에서 지원해 주길 희망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시설/설비/기자재/인력/교육/기술지도/경영/마케팅/홍보 등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3) 입주시 센터로 반입 예정 시설/설비/기자재

※ 시설/설비/기자재명, 사용전원, 용도, 규격, 크기, 중량(kg), 수량, 금액 등을 기술

※ 제품 개발시 필요한 고가 시설/설비/기자재명을 기입함
(초당대학교 보유시설/설비/기자재 등을 활용할 경우, 그 내용도 작성함)

【별지 제4호 서식】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 연장희망원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주 소				전화번호/FAX TEL. FAX.	
주생산품목				제품 사용분야	
입주기간만료일		년 월 일		연장신청기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희망면적		m ²	전년도매출액		종업원수 명
참 여 인 력	성 명	참 여 분 야			비 고
위와 같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_____ 대 표 자 : _____ (인) 초당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귀하					

창업보육센터 졸업신청서				
졸업 신청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대표자 생년월일	
	입주보육실	호 (m ²)	창업아이템	
	입주일자		졸업신청 일 자	
	졸업유형	☐ 입주기간 만료 ☐ 조기졸업		
입주시 사업추진계획 달성도		☐ 기술개발단계	☐ 상품화단계	☐ 사업화단계
졸업 후 이전지 및 연락처				
졸업 후 보육실 원상복구 계획				
위와 같이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졸업기업 : 대 표 자 : (인) 초당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창업보육센터 퇴거희망원				
퇴 거 신청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대표자 생년월일	
	입주일자		입주보육실	호 (m ²)
	입주기간만료일		퇴거희망 일 자	
	퇴거유형	☐ 입주기간 만료 ☐ 자진퇴거		
퇴거 및 보육실 원상복구 계획				

위와 같이 귀 창업보육센터를 퇴거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퇴거희망기업 : _____
 대 표 자 : _____ (인)

초당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귀하